

차. 손해배상(해)¹⁶²⁾

☐ 손해배상(해)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☐ 손해배상(해)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☐ 손해배상(해)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1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162) 손해배상(해)로 표시할 사건 :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(재판예규 제1775호)